

공중화장실법안(假案)

국회의원 심재철

본 내용은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가칭)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 ②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공공의 장소에 설치한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③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사적 소유의 화장실을 지정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사용을 개방한 것을 말한다.
- ④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행사 등 일시 적으로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 임시화장실을 말한다.

⑤ "기타 화장실"이라 함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화장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중 화장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 (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의 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 의 화장실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화장실
2.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관광이용객을 위하여 관광지의 관리자가 설치한 화장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5.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6.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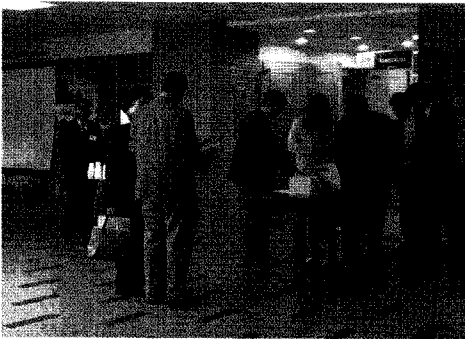
▲공청회에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공중화장실법안은 법률제정을 위한 가안(假案)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에 관심이 많은 개인 및 단체에서 본 법률에 삽입 및 삭제되어야 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 전화 : 02)784-4164 ▶ 전송 : 02)788-3201 ▶ e-mail : yang9804@daum.net



▲공중화장실 법률제정 찬성 동의서 제출 모습.

7.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10.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 여객시설
 1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2. 문화재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13. 석유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② 기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화장실의 설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공중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화장실의 설치는 이용자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전체 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남녀 화장실의 변기비율을 최소 1:3의 비율이상이 되게 설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기타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방화장실)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공청회가 개최되었던 한국관광공사 상영관 입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어렵거나 개방화장실의 지정이 어려운 장소에 법제2조제4항의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적 행사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적절한 규모의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타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6조, 제7조,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공청회를 마치고 발표자와 함께 기념촬영▶



제14조(유료화장실 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유료화장실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 및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청결도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금지행위) 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한다.
1. 공중화장실의 건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의 이용 중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여 사용수료를 징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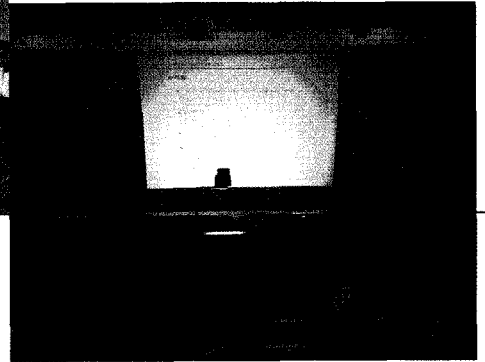
행위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광고물 및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와 위탁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유지·관리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비용의 보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관광지, 자연공원, 재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나



공청회 장소는 정보교환 및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역할도 한다.▶



관광객 및 다수인이 왕래가 잦은 장소의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보고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공중화장실 업무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참조 토양법에서는

대령으로 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폐지한다